

일러두기

‘산림청 자체감사 반복지적 사례집’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산림청 자체감사에서 지적한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행정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 총 1,897건을 바탕으로 반복 지적되는 사례 100건을 간추려 정리한 것으로써 감사 당시의 법령과 규정, 기관·행정구역의 명칭, 용어 등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집에 적시된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수록된 내용과 현행 법령이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 법령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쪼록 산림청 실무자들이 본 자료를 참고하여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산림청 자체감사 반복 지적사례집

(2010 ~ 2015)



목 차

I. 예산·회계 분야	7
1. 국가 채권 관리 부적정	9
2. 도급문서 인지세 미징수	10
3. 일상감사 추진 부적정	10
4. 산림사업 지체상금 부과 부적정	11
5. 예산집행 항목 적용 부적정	11
6. 정부구매카드 목별 사용 부적정	12
7. 물품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13
8. 시설공사 하자보수계약 미체결 등 사후관리 부적정	14
9. 교육기자재 구입 및 활용 미흡	14
10. 회계직 공무원 인계 인수 미실시	15
11.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지급 부적정	15
12. 시약 등 구입물품 계획구매에 관하여	16
13. 직원숙소(관사)사용료 미납부	17
II. 국유재산관리 분야	19
1. 국유림 사용료 부과 부적정	21
2. 국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료 미부과	21
3. 산지전용 허가지 추가복구비 미예치	22
4.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와 무상대부 및 기간갱신 부적정	22
5. 국유재산 대부료 미징수	23
6.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절차 부적정	23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감면 부적정	24
8. 국유재산 경계표주 설치 및 사후조치 미이행	24
9. 국유림 사용허가 부적정	25
10. 국유림의 종류구분 관리 부적정	26
11. 산지 일시사용 불허가 처분 부적정	27



III. 산림경영 · 토목 분야	29
1. 신규취득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미편성	31
2.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 미활용 및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추진	31
3. 운재로 준공검사 미실시	32
4. 국유임산물 반출 사후관리 부적정	32
5. 국유임산물 입목처분 자재조사 부적정	33
6. 국유임산물 현장인도 미실시	34
7.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전 물건인도	34
8.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 강화	34
9. 작업임도 및 작업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35
10.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미준수	36
11. 사방댐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계약 미체결 및 특허수수료 미납부	37
12. 산사태 위험지 관리 부적정	38
13. 사방댐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39
IV. 자원조성 · 보호 분야	41
1. 무상대여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부대경비 지급 부적정	43
2.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43
3. 숲가꾸기 사업 실행 부적정	44
4. 임업기계장비 운영관리 부적정	44
5. 숲가꾸기사업지 선목 작업 부적정	45
6.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부적정	45
7.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관리 부적정	46

8. 조림수종 선정 부적정	47
9. 조림지 활착률 조사 부적정	48
10. 숲가꾸기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48
11. 조림지 풀베기 사업 적기 미실행	48
12.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실행 부적정	49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한 준수 미흡	49
14.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협업방제 미흡	50
15. 소나무류 생산확인 부적정	51
16.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원가 산출 부적정	51
17.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비 산출 부적정	52
18.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실행 부적정	52
19.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작업원 관리 및 공시목 처리 부적정	53
 V. 복무 분야	 55
1. 민원서류 접수 관리 소홀	57
2. 외부강의 사전신고 미이행	57
3. 각실 보안점검 소홀	58
4. 개인별 전시임무카드 정비 소홀	58
5. 휴대용저장매체 점검 소홀	59
6. 유연근무제 출·퇴근 시간 등록 소홀	59
7. 출장조치 미이행	60
8.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소홀	60
9. 공용차량 운행 관리 소홀	61
10. 차량유류구매카드 사용 부적정	61
11.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 미기록	62
12. 현업근무일지 작성 소홀	62
13. 산불신고 단말기 점검 소홀	63



14. 근무상황 사후 자연처리	63
15. 공무상 병가 처리 부적정	64
16. 연말 공사감독관 작업복 구입 부적정	65
17. 비밀문서 관리 소홀	65
18. 비밀문서 분류 관리 소홀	66
19. 비공개 대상 문서 보안관리 소홀	66
20. 소화기 소방점검 미실시	67
21. 당직 지시사항 전달 소홀	68
22. 개인별 보안점검 소홀	68
VII. 임업정책자금 분야	69
1. 융자금 임산물 구입비 인정한도 초과지원	71
2. 조경수생산자금 융자한도 초과 지원	71
3. 융자금 집행실적 검증 및 정산 미실시	72
4. 표고생산 융자금 대출 부적정	73
5. 사망자 대출금 사후관리 부실	74
6. 임야매입자금 구입 임야 산림경영계획 미수립	74
7. 임업용 면세유류 신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미흡	75
8. 시설자금 목적 외 사용	76
9. 숲가꾸기 융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77
10. 숲가꾸기 융자사업 자금집행 검정 부적정	77
11.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로부터 한도 초과 임산물 구입	78
12. 직접노무비 검증 및 정산 부적정	78
13. 임업정책자금 경영실태조사 미실시	79
14. 전문임업인육성자금 융자지원 부적정	79
15. 임업정책자금 사업실적 증거자료 검증 미흡	80

VII. 기 타	83
1.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적정	85
2. 면세대상 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85
3. 임업기계장비 구입 후 미사용	86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계상 및 미정산	86
5. 산림토목사업 선금사용 부적정	87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88
7.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89
VIII. 모범 · 수범 사례	91
1.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적극적인 대응 및 합리적 관리	93
2. 대면적 군(軍)사용허가지 적극 반환 조치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마련	95
3. 국방부와 업무협업으로 훈증목 수집·파쇄하여 경관개선 및 산업적 활용	96
4. 지역주민·시민단체 공동협력으로 기관이미지 제고	97
5. 휴양시설물 관리방향 전환으로 예산 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98
6. 목재에너지림 기반조성 시공방식 개선 우수사례	99
7. 신규직원 현장체험 교육	100
8. 수목장림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협력	101
9. 소나무재선충병 협업방제 실시	103
10. 글로벌 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교육 운영	104
11. 음주운전 추방대책 강구·시행하여 공직기강 확립 노력	105
12. 다양한 도감 출판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국고 수입 증대에 기여	105
13. 공용차량 유류비 단가계약 및 차량 배차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106
14. 「2013년 산림항공비전」 추진을 통한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기여	106
15. 목재이용가치 활성화를 위한 목재 저목장 조성·운영	108

I

예산 · 회계 분야





1

국가 채권 관리 부적정

-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한 후 그 독촉기한이 지나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를 추진하는 등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는 2003.11월부터 2007.8.20.까지 ○○○에게 매점 및 식당으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던 ○○군 ●면 ○○리 ◇◇◇산림전시관을 ◆◆◆산림수련관으로 용도 변경하여 수차례 이전토록 청문 및 방문을 하였으나,
-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자진철거 및 퇴거 약속이 이행되지 않아 불법 점유에 따른 채권(변상금) 14,639,130원이 발생함.
- 2007.1.17.자로 ○○지방법원 ○○군법원에 ○○소재 아파트를 가압류 신청하여 무단점유 변상금 9,813,640원을 2007.2.7일자로 부동산 가압류 결정하였으나, 채무자 ○○○가 2007.7.27.자로 채권액 전액 (9,813,640원)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부동산 가압류 집행을 취소 받았는데도 확보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 2007.05.23부터 2007.08.20까지 발생한 채권(변상금, 4,825,490원)에 대하여 채권시효 완성일(2012.11.15.)까지 아무런 가압류 등의 채권 확보 조치를 취하거나, 공탁금(9,813,640원)에 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확보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상금 고지서만 발부함.
▶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변상금 4,825천원 징수하고, 법원에 공탁금 9,814천원 회수

2

도급문서 인지세 미징수

- 「인지세법」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하는 도급 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는 계약금액에 따라 2만원부터 35만원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산림청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서면으로 작성한 ○○○○사업소 배수로 정비공사 등 도급 계약서 4건에 대하여 80,000원의 수입인지를 미징수 함.

▶ 「인지세법」에 따른 관련 규정 준수 철저

3

일상감사 추진 부적정

- 「산림청 일상감사 실시지침」에 따라 집행부서의 장은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건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심사하기 위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국유림관리소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1건 일상감사를 미실시 함.
- ○○국유림관리소는 ○○군 ●면 ●●리에 ①②③④식물원 조성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2012.2.27. 자로 일상감사를 승인을 받아 건축 공사는 (주)○○건설과 1,509,950천원에 계약하여 20% 증액 설계변경하고, 소방공사는 ●●토건과 119,828천원에 계약하여 15% 증액 설계변경하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고, 식물원 신축 조경공사의 예정 가격 또한 201,000천원인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인데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았음.

▶ 일상감사 및 계약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관련자는 신분상 조치하고, 지방청에서는 관련업무 관리감독 철저



4

산림사업 지체상금 부과 부적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 ○○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2차 사업을 2012.11.30. ~12.14. 까지 17,190천원에 (주)○○○ ○○○과 계약체결하였는데, 계약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가 제출되어 계약기간 익일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여 103천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준공계를 제출한 3일간만 부과하여 52천원을 부족하게 부과함.
- ◉ ○○국유림관리소는 2013년 숲가꾸기사업 3건, 2014년 조림사업 1건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면서 계약기한을 경과하여 준공계가 접수되어 계약기간 익일부터 준공검사 합격일까지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하는데, 준공계 제출한 날까지만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총 4건에 지체상금 4,879천원을 부족하게 부과함.
▶▶ 부족하게 징수한 지체상금 4,930천원을 환수조치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하고 관련자 신분상 조치

5

예산집행 항목 적용 부적정

- ◉ 2013년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또는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는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로 집행하여야 함.

- ◉ ○○국유림관리소는 산림자원육성 및 본청 전산운영경비 등의 일반 수용비로 배정된 예산 중 일부를 컴퓨터, 노트북, 스캐너 등 예산집행 세목에 맞지 않게 자산취득비 항목의 물품을 17,181천원 집행하였고,
 - ◉ ○○○○○관리소는 산림바이오매스확충 및 본청 전산운영경비 등의 일반수용비로 배정된 예산 중 일부를 컴퓨터 액정 모니터, 레이저프린터 등 자산취득비 항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예산집행 세목에 맞지 않게 자산취득비 항목의 물품을 7,790천원 집행함.
- ▶ ○○·○○○국유림관리소장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사업비 집행

6

정부구매카드 목별 사용 부적정

- ◉ 「국고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르면 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예산과목 및 카드사용자별로 정부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관리소에서는 2013.1.1.부터 2015.4.30.까지 정부구매 카드를 사용하면서 차량유류 구입 12건, 812천원에 대하여 운영비카드 (210목)를 사용하지 않고 여비카드(220목)로 11건, 업무추진비카드 (240목)로 1건을 각각 사용하여 차량유류 대금을 결재하였음.
-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7

물품구매 수의계약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데,

- ○○기관은 2013.1.1.부터~2015.6.30.까지 1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구매계약 14건을 2인 이상으로 부터 견적을 받지 않고 1인 견적을 받아 공사자재를 구입하였으며, 2014.9.2. '(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벤치플룸관(총206개, 21,844천원)을 구매하면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함에도 1인 단독 견적을 받아 일반계약으로 구매하였음.
 - ○○○○○ 관리소는 “안전운항정보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안전운항정보 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데도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지 않고 1인으로부터 서면견적을 받아 계약체결하였으며,
 - ○○○○○ 관리소는 시뮬레이터실 설치공사를 서면에 의한 단독 견적으로 수의계약체결하기 위하여 “시뮬레이터 칸막이설치 및 시뮬레이터 바닥공사” 등 2천만원 미만으로 분리발주(2건) 하였음.
- ▶ 앞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추진하도록 주의 촉구

8

시설공사 하자보수계약 미체결 등 사후관리 부적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의하면 공사의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공사의 하자보수 보증을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리 납부(계약금액의 2/100~10/100)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 산림항공관리소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청사 및 관사수리 등 총 14건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하자보수계약 미체결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미부과함.

▶▶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계교육 실시

9

교육기자재 구입 및 활용 미흡

- 국가물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데,
- ○○○○○에서는 2007년도에는 유용임산버섯과정에 표고원목재배 교과목이 있었으나 2008년에는 폐지되어 기자재를 활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12.12. 자로 버섯종균접종기(800천원)와 버섯종균자동주입기(2,516천원)를 구입한 결과 감사일 현재까지 전혀 사용하지 않고 물품 창고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음.

- ▶ 앞으로 물품구입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물품활용 여부를 검토하여 관리전환 또는 매각 등 조치

10

회계직 공무원 인계 인수 미실시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에서는 2010~2012년까지 회계직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물품 수입금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각 5회, 유가증권취급공무원 2회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지 않고 인계 인수를 하지 않음.

- ▶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인계 인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주의 촉구

11

공무원 부양가족 수당지급 부적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부양가족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1명당 월 20,000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 임업서기 ○○○은 2013.2.12. 주소지가 변경되어 직계존속(부모)과 주소를 달리하고 있는데도 부양가족(2인 40천원/월) 변동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2013. 3월부터 2013. 8월 까지 가족수당 240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함.
▶▶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 240천원을 회수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12

시약 등 구입물품 계획구매에 관하여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방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 설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을 계약의 원칙으로 하되, 수의 계약은 목적, 성질, 규모, 예정가격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센타에서는 2012~2014년 동안 시약 등 연구수행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소모성 물품을 총58건(676,504천원)을 구매하면서 조달계약으로 4건(312,964천원)을 수의계약으로 55건(363,540천원)을 수시로 구매하고 있으나, 시약 등은 연구수행으로 매년 반복 구매되고 있으므로 사용시기와 사전 수요량 예측이 가능하므로,



- 소모성 물품의 무분별한 구매를 억제하고 국가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구매 및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시약 등에 대해서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일괄구매하는 것이 필요함.
- ▶▶ 매년 반복 구매 및 수요량 예측이 가능한 시약 등에 대해서는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일괄구매 하도록 조치

13

직원숙소(관사)사용료 미납부

- 「○○○○○○○○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 책임자(행정지원과장)는 관사 입주자의 선정 및 퇴거에 관한 사항 등 관사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의 규정에 입주자는 관사에서 사용한 전기료, 전화료, 가스료(난방료), 청소료, 안전관리비 등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리소 2010. 3월 ◇◇◇자연휴양림 숲해설가 ◆◆◆과 ◇◇◇자연휴양림 청원산림보호직 ◆◆◆, 같은 해 4월에는 ◇◇◇자연휴양림 청원산림보호직 ◆◆◆에게 관리사사용에 따른 제세공과금 952,260원을 징수하였으나 그 이후로 징수하지 않음.
- ◇◇◇ 등 자연휴양림 근무자들이 직원숙소로 사용하는 관리사, 숲 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등 숙박시설의 일부를 입주직원들에게 「○○○○○○○○관리소 관사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전기료, 전화료, 가스료, 청소료 등)를 납부받지 않고 있음.
- ▶▶ 직원숙소를 위한 관사를 확보하도록 하고 확보되기 전까지는 숙박시설 크기 등에 따라 2인 이상 사용

II

국유재산관리 분야





1

국유림 사용료 부과 부적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 8조의 2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인 경우 대부료의 전부를 징수하지 않을 수 있음.
-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관리소에서 사용허가 한 활공연습장, 공원묘지, 야영장 등 6건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공용 시설이 아닌 사용료를 지불하는 특정인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전부 감면하였음.

▶▶ 국유림 사용료를 유상으로 전환하고 미부과한 사용료 15,930천원 부과

2

국유재산 사용료 등 연체료 미부과

- 「국유재산법」제73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 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2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는 국유재산 대부료 등 42건 133,576천원이 납부 기한을 경과하여 수납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체료 총 42건 11,155천원 미징수.
- ▶▶ 미부과한 연체료 부과 조치 및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주의 조치

3

산지전용 허가지 추가복구비 미예치

-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고, 제3항에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1년 이상 사용하는 경우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는 2010년도부터 2013.9.27. 까지 매년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부족액을 추가예치 받지 않고 허가기간 갱신시에만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받은 결과 2013년도 산지복구비 추가 예치대상은 20건에 147,211천원을 부과하지 않음.
 - ▶▶ 미예치된 복구비(20건, 147,211천원)는 예치하고 예치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업무관련자는 신분상 경고 조치

4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와 무상대부 및 기간갱신 부적정

- ○○국유림관리소는 ○○○○시설공단에서 시행한 「○○～○○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편입된 국유림(총 26필지, 118,850m²)을 2009.7.23.부터 2014.6.30.까지 무상대부(사용허가) 하였으나,
- □□□□□□□ 철도사업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대부료는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 조치가 필요하고, 또한 대부(사용허가)기간이 2014.6.30. 종료되어 기간갱신이 필요함에도 2015.6.27. 까지 기간갱신하지 않고 있음.
 - ▶▶ 철도사업 부지에 편입된 국유림 사용허가의 유상 전환 및 기간갱신 조치



5

국유재산 대부료 미징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거용 대부료는 해당 재산가액의 20/1000으로 대부료를 받도록 하고,
- 재산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는 강원도 ○○시 ○○동 834-47번지, 343m²를 ○○○에게 주거용으로 사용허가하면서 표준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51,300원을 부과하여야 하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경작용(10/1,000)에 해당하는 대부료 1,190원을 부과함으로써 50,110원을 부족하게 징수 함.
▶▶ 부족하게 징수한 대부료 50,110원은 부과 · 징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 조치

6

불법산지전용지 복구 절차 부적정

- ⑩⑪국유림관리소는 2013년 불법산지전용 사건처리한 2건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의무자(2명)에게 복구명령을 하였으나,
- 복구의무자는 복구비 예치만 이행한 후 복구설계서 제출 및 승인신청을 미이행하여, □□□경영팀 직원이 직접 복구설계한 후 이를 관리소에 보고하였고, 관리소에서는 보고된 복구설계서에 따라 복구의무자가 복구이행하도록 한 후 복구완료 및 준공 처리하고, 예치한 복구비를 반환받도록 안내함.

- 그러나, 복구의무자는 복구설계서 제출,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복구 준공검사신청 절차를 미이행 하였고, ⑩⑪국유림관리소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복구설계서가 작성기준대로 작성되지 않은 것을 별도 설계서 승인절차 없이 복구한 후 부적정하게 준공처리함.

▶▶ 불법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 및 준공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7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감면 부적정

- ◇◇국유림관리소는 ◇◇군에서 2011년 승인한 “○○리조트 조성사업 (시행자 (주)○○○○○)”에 대하여 2009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적용하여 12,686천원을 부족하게 징수함.

※ 2011년 고시 : 준보전산지 2,560원/m², 보전산지 3,320원/m²

- ◆◆국유림관리소는 “■■군 승마장 조성사업”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 아님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50% 감면하여 정당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9,450천원을 부족하게 징수함.

▶▶ 부족하게 징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징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8

국유재산 경계표주 설치 및 사후조치 미이행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조 및 국유재산 경계표주설치 세부기준에 따라 경계표주를 정확히 설치하고, 국유재산(국유림)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여 같은 법 제72조 1항에 따라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 ◆◆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대한지적공사에 측량 의뢰하여 ■■군 ■■면 ■■리 국유림 산386번지에 경계표주를 설치하였는데, 연접된 사유토지 139-2, 138번지에서 국유림 약 0.3ha를 무단점유하여 더덕 재배를 하고 있고 약 0.1ha정도가 무입목지 상태인데도, 무단점용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 ◆◆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평창군 ■■면 ■■리 국유림 산1-1번지에 경계표주 5개를 설치하면서 발견한 경작용 무단점유지 약 0.4ha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
- ▶▶ 무단점유지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조치 및 등 조치 및 업무관련자 신분상 경고

9

국유림 사용허가 부적정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및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면적은 벼섯류·산나물류·약초류(산양삼 제외) 및 약용수종류의 경우 5만m² 이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3항제5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안에서 산나물 등의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은 농림어업인이 3만m² 미만의 산지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행위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별표 3의3에서는 입목의 별채·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3만m²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음.
- ◉ ○○국유림관리소는 ○○군 ○면 ○○리 산12번지 일원에 산나물·약초·약용류 재배목적으로 국유림사용허가(2011.6.14.)를 하면서 국

유림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 협약 대상 및 산촌개발사업 승인 대상
지라는 사유 등으로 농림어업인(실제 경작자)이 아닌 ○○군수에게
사용허가 기준면적(5만m²)을 초과하여 243,808m² 사용허가 하였으며,

- '09.06.18 국유림 활용한 산림복합경영 협약(관리소+군+산림조합+○○리)
- '11.01.27 ○○리 산촌개발사업 승인(국유림임대를 통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 ◉ 현재 사용허가지는 사용허가를 받은 ○○군수가 아닌 ○○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산촌개발사업 일환으로 약 5만m² 가량 임산물 생산단지로 조성하여 활용하고 있음.

▶ 관련법령에 따라 실 사용면적을 농림어업인에게 사용허가 조치

10

국유림의 종류구분 관리 부적정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소관 국유림은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중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일단의 면적이 특·광역시(군지역 제외)의 경우 2ha이상, 시지역(도농복합형태 읍·면 제외)의 경우 5ha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ha 이상인 경우 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방산림청 본청 및 소속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아래 '요존국유림 종류구분 할 재산 현황'과 같이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10필지 258,424m²에 대하여 요존국유림으로 종류 재구분하지 않고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지방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는 요존국유림으로 관리해야 할 40필지 241,768m²를 불요존국유림으로 관리

▶ 관련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



11

산지 일시사용 불허가 처분 부적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산지관리법」 제10조, 제12조 제1항, 제15조의2 등에 따라 ►►국유림관리소는 산지 일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행위제한 사항의 부합 여부 등이 적합 및 다른 법률 또는 규정 등에 저촉사항이 없다고 검토하였으며, 주식회사 ▽▽이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산지전용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지 않음.
- ►►관리소에서는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주식회사 ▽▽으로부터 제출 및 검토하지 않고 ‘신청지 일원은 국유림경영계획 수립과, 신청지 일원의 산림복구가 원칙이고 ►►►►관리공단에서 복구설계를 진행 중이며, 신청지 일원에 일시사용허가를 요청하는 또다른 민원에 대하여 불허가 상담을 하여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실과 다르거나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거부처분을 함으로써 민원을 야기함.
 - ▶▶ 국유림관리소장은 주식회사 ▽▽ 등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등에 따라 허가처분 여부 재검토
 - ▶▶ ○○국유림관리소에서 복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제지로 분류된 지역을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라는 이유 등으로 산지 일시사용 불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 촉구

III

산림경영 · 토목 분야





1

신규취득 국유림 산림경영계획 미편성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림 취득재산 등에 대하여는 산림의 토양, 식생, 임목의 생장량 등 산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국유림경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지방산림청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규취득 한 경영계획 편성대상 산림 4,380ha 중 약 31%인 1,338ha에 대하여는 산림조사를 실시하고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였으나 약 69%인 3,042ha에 대하여는 산림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신규취득 국유림에 대한 산림조사와 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통보

2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미활용 및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추진

- 산림청예규 「국유림경영계획 작성 및 운영요령」 제15조에 따르면 국유림 관리소장은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국유림경영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산림청장은 이를 승인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경영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음에도 총 39건(2014년 22건, 2015년 17건)을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산림청장에게 변경·승인 득한 후 산림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실행하여 시스템기반의 경영계획수립 및 사업이력 관리를 소홀히 함.
▶ 행정상 경고 조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 국유림 경영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실시

3

운재로 준공검사 미실시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 제12조에 의하면 산물매수인이 운재로 시설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국유림관리 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소관 관서의 장은 설계서에 의하여 준공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매수산물을 반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됨.
- ○○국유림관리소는 2012년~2013년까지 4건의 입목처분지내에 운재로 5,160m를 산물매수인이 시설한 후 준공검사 절차 없이 매수산물을 반출하였는데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음.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관련자 신분상 조치

4

국유임산물 반출 사후관리 부적정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서 【별지 19호 서식】 제5조에 의하면 미반출산물은 국고에 귀속되며, 제12조에 따라 매수임산물의 반출을 완료한 때에는 즉시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 2014년 입목처분 17건, 생산재매각 44건을 추진하면서 반출완료계를 1건만 서면으로 접수받고, 43건은 구두로 반출완료 상황을 통보받았는데 문서등록을 하지 않아 반출 기한 내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 또한 반출완료지에 대한 반출완료 여부, 추가형질변경 및 경계 침범 여부 등을 출장복명서 등 기록으로 남기지 않아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불가능 함.
▶▶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문서로 접수하고 반출완료지에 대한 산물반출, 경계침범 등 사후관리에 철저



5

국유임산물 입목처분 자재조사 부적정

-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표준지조사시 벌채구역 내의 임상이 균일하지 않아 상·하층 등 수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임상의 계층별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 같은규정 제9조에 조재율 및 품등조사는 벌채대상목의 나무 종류별 수량이 100입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 벌채구역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10본이상 10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의 0.3퍼센트(2014.4.2. 이전에는 0.5퍼센트) 이상으로 조재율 및 품등조사 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는 2012. 4. 월 임지잔재 자원화 시범사업 자재재 조사를 하면서 표준지 재적조사시 벌채대상지 28.3ha의 5.9%인 1.67ha를 2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표준지 조사한 결과 벌채구역의 임상이 균일하지 아니한데도 계층별로 표준지를 조사하지 않고, 벌채 예정재적을 표준지재적×벌채구역면적/표준지면적으로 산출함.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임산물 입목처분을 위하여 2013년 4건, 2014년 2건에 대하여 재적조사하면서 벌채대상목의 수량이 100m³ 이상인 경우에는 벌채대상목에서 각 경급별로 조재율 및 품등조사 표준목으로 선정하여야 하는데 경급별로 조사하지 않음.
- ▶▶ 국유임산물 자재조사를 부적정하게 조사한 관련자 주의 조치

6

국유임산물 현장인도 미실시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국유임산물의 매각기준」에 따라 국유임산물을 매각 계약 후 매각대금의 납부를 확인하고 산물의 소재지에서 인도증을 교부하여야 하나,
- □□국유림관리소는 지장목 입목처분 매각계약 2건에 대하여 매각대금 납부 후 현장인도를 실시하지 않았음.

▶▶ 국유임산물 매각 관련 규정 준수 철저

7

국유임산물 매각대금 납부전 물건인도

- 국유임산물 인도시 매각대금 납부확인 후 인도증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2년 입목처분은 대금 납부일보다 3일 앞서 현장인도, 2014년 임도 사업 지장목 입목처분(2건)은 현장인도 미실시 함.

▶▶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8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주민설명회 강화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산사태방지분야 시행계획」에 따르면 임도 및 사방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가능한 사업착수 이전에 지역주민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 필요성 및 사업개요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필요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음.



- ● 국유림관리소는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30건의 임도사업(5)과 사방사업(25)을 추진하면서 사업착수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강행 후 주민설명회를 실시함에 따라 지역주민과 갈등초래 및 주민설명회 없는 공사강행 등 부정적 언론보도 등 산림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훼손을 유발함.
- 2015년 △△군 ▲▲리 산75-22번지 사방사업을 추진하면서 2015.3.10. 사업착수 하였고, 사업착수 이후인 2015.4.10.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주민요구에 의해 2015.4.5.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2015.4.7. 지역주민 민원 및 취재사항이 언론보도 됨.
- 앞으로 임도 및 사방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가 필요함.
▶▶ 임도 및 사방사업 추진시 사업착수 이전에 주민설명회 개최토록 조치

9

작업임도 및 작업로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 내지 제5조에 따라 산림기반시설(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산림청 훈령)」 제7조에 임도의 타당성 평가위원에는 지역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센터는 2012.4.19.(목) ◆◆.◆◆.◆◆ 산242-58외 1개소 7km에 대하여 “2012년 작업임도 예정지 타당성평가”를 추진하면서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타당성평가를 실시하였고,
- 또한, 타당성 평가 결과 4km구간 적합 판정을 받아 ○○○○○○ 회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2012.5.25.~6.23.)하고, ○○○○○○과 임도 신설공사(2012.6.27.~10.24)를 추진하였으나,
- 실시설계 현장인도(2012.5.25.) 이후 “○○시험림의 현지 지형이 복잡하고 지질특성(진사토)에 따라 옹벽 등 토사유출저지를 위한 구조물 설치가 다수 필요하다는 사유”로 작업임도와 작업로 신설사업 대상지를 변경하여,
- 작업임도 예정지가 ◆◆.◆◆.◆◆ 산1-14는 삭제, ◆◆.◆◆◆.◆◆. 산32 추가되는 등 사업현장, 물량 등이 공사전반에 걸쳐 변경됨에 따라
- 작업임도 설치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타당성평가를 다시 실시하고 타당성평가 적합판정 이후에 실시설계 변경계약(과업지시서 6. 설계변경조건)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사업추진함.
▶ 산림기반시설(임도)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타당성 평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재발방지 및, 관련자 신분상 주의조치

10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미준수

-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및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에 따라 시공자는 5억원 미만인 산림토목 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1인 최대 3개소



이내에 현장대리인(산림공학기술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현장대리인으로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배치하여야 함.

- ◉ ○○국유림관리소는 2013. 3월에 ○○시 ○○면 ○○리 사방댐 등 4건의 산림토목공사를 ○○시산림조합과 계약체결하였는데 현장대리인을 4 건에 중복배치하고,
 - ◉ ○○국유림관리소는 2011. 3월에 ○○군 ○○면 ○○○리 임도구조 개량 사업 등 5건의 산림토목공사를 ○○군산림조합과 계약체결하였는데 현장대리인을 5개소에 중복 배치하였으며, 같은해 3월 ○○○에서 발주한 2건의 사방댐공사에도 배치하여 총 7건에 중복 배치 하였으며,
 - ◉ ○○국유림관리소는 2011. 3월 ○○도 ○○군 ○○읍 ○○리 사방댐 설치사업 등 3건의 산림토목공사를 ○○군산림조합과 계약체결하고 현장대리인을 3개소 중복 배치하였는데, 같은해 3월 ○○도에서 발주한 1건의 사방댐 공사에도 배치하여 총 4건에 중복 배치 함.
- ▶ 관련규정에 따라 산림토목사업에 현장대리인 배치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

11

사방댐 국유특허의 통상실시계약 미체결 및 특허수수료 미납부

- ◉ 국유특허권을 사용하는 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허청장과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국유특허 공법 “다기능사방댐 및 그 시공방법 (560986)” 이 적용된 사방댐을 2011년 및 2012년에 3개소 특허수수료 7,562천원을 반영하여 사업실행 하였으나,

- ◉ 시공사인 ▽▽시산림조합 및 △△군산림조합은 특허청장과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허수수료 7,562천원(▽▽ 5,685천원, △△ 1,877천원)을 국가에 납부하지 않음.
 - ▶▶ 특허청장과 통상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수수료 7,562천원 납부

12

산사태 위험지 관리 부적정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의 규정에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국유림관리소는 2006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군수가 지정 고시 한 ○○군 ○면 ○○리 산40-1번지 국유림 0.12ha에 대하여, 2011년 가비온옹벽, 떼수로 등 산지보전사업을 14,493천원의 예산으로 시설하여 산사태 위험이 해소되었는데도 지정권자인 ○○군수에게 “산사태 위험지역” 을 해제요청 하지 않음.
 - ▶▶ ○○국유림관리소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산사태 위험산사태 위험지역 지정 해제 요청



13

사방댐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부적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르면 사방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는 7년, 그 외의 시설은 5년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하고 있음.
 - ◉ ○○ 등 6개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총 14건의 사방댐 공사를 계약하면서,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7년)에 해당되지 않는 전석·콘크리트·생태블록 사방댐 총 11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그 외의 시설 5년이 아닌 7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7년)에 해당하는 그리드 사방댐 총 2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7년이 아닌 5년으로 설정하였음.
- ▶▶ 관련 규정에 맞게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정 조치

IV

자원조성 · 보호 분야





1

무상대여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부대경비 지급 부적정

- ◉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에서 임업기계장비를 기능인영림단, 산림조합 등에게 무상대여 가능하므로, 원가계산시 산물수집비(직접노무비, 재료비, 기계경비) 중 기계경비는 설계에 반영할 수 없음.
- ◉ ① 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숲가꾸기사업시 ■■■영림단에게 임업기계장비(굴삭기 및 우드그랩)를 무상으로 대여하였음에도, 기계경비(427천원) 및 일반관리비, 이윤 등 부대경비(114천원)를 포함하여 541천원을 정산없이 대금 지급함.
 - ▶▶ 과다지급된 기계경비 등 541천원을 회수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교육 철저

2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 운영 부적정

-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림사업시 현장대리인의 중복선임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관리자를 선정하여 산림사업(숲가꾸기, 병해충, 사방사업 등) 계약사항 및 현장대리인 선임사항을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기술자 관리시스템」에 등재 하여야 하나 ■■■■■산림청은 산림사업 610건 중 139건의 산림사업 계약현황 및 현장대리인 선임사항 미등재 됨.
 - ▶▶ 산림사업 현장대리인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산림기술자관리시스템 관리 철저

3

숲가꾸기 사업 실행 부적정

- ■■ 국유림관리소는 2013.10.~12월 기간동안 oo.oo산155외 1필지 20ha (입목 1,639m²)에 대하여 강도의 다층림 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상 1,052m³ 원목생산 계획임.
- ▽▽▽▽▽▽영림단과 도급계약 결과, 1,052m³(104,000천원) 보다 644m³ (27,220천원) 증가된 1,696m³(131,220천원) 원목생산하여 사업실행 과정에서 과도한 입목벌채 발생됨.
-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관리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4

임업기계장비 운영관리 부적정

-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 의하면 임업생 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
- 「임업기계장비 운영지침」에 따라 보급된 임업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책임자 지정관리, 연간운영계획 수립·시행, 대여기간은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 임업기계장비별로 이력카드, 대여 대장, 수리내역 및 사용일지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기록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산림청에서는 최근 4년간(2011 ~ 2014년) 지방청 및 지자체, 기계 지원센터에 24,065백만원을 임업기계장비 구입예산으로 배정하여 □□지방산림청에서는 4년간 2,171백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하며 일부장비는 고장난 상태로 폐기 등의 적정한 조치없이 방치함.

- ▶▶ 임업기계장비를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하도록 하고, 임업 기계장비 운영활성화 개선대책을 마련

5

숲가꾸기사업지 선목 작업 부적정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지침」 제16조 제2항에 선목이 완료된 후에 숲가꾸기 사업을 착수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는 ○○군 ○○읍 ○○리 80-3소반 2ha, 같은리 80-4 소반 1ha의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선목사업비가 반영(421,804원) 되었는데도 선목없이 사업 실행하여 사업실행된 지역을 표본 조사한 결과 8.3%에서 4.5%까지 과다하게 벌채함.
- ▶▶ 숲가꾸기 사업지에 대하여 선목 실행 후 사업실행 하도록 통보

6

숲가꾸기 작업원 관리 부적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의 규정에 국유림 영림단을 조직하려는 사람은 6명 이상 30명 이하의 구성인원으로 기능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의 60퍼센트 이상에 기술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가 구성인원 중에 1명 이상의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림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음.
- 「같은 법률」 부칙<제11456호, 2012.6.1.>에 제5조의 규정에 국유림

영림단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함.

-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0조(작업원)의 규정에 따라 속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영림단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영림단은 작업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감리원을 경유 감독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 ○○·○○·○○·○○·○○·○○·○○국유림관리소는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28개 영림단과 138건의 숲가꾸기사업을 계약하였는데 16개 영림단에서 70건의 산림사업에 작업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인력을 참여시켜 국유림영림단원의 구성인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에 국유림영림단 변경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 이중 ○○·○○·○○국유림관리소와 계약한 ○○기계화임업 등 8개 영림단은 국유영림단 구성요건인 산림경영기술자 60% 기준보다 낮은 인력으로 속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사업을 16건 실행함.
▶ 관련법률에 따라 2013.6.1.부터 국유림영림단 등록여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 실행한 영림단에게 영업정지 조치, 작업원 관리를 소홀히 한 관리자에게 신분상 주의 조치

7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납부관리 부적정

-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제24조의 원가 작성 기준에 따라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원가계산서에 계상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는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공사원가에 계상하였는데 6개 영림단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1건 204,507천원(미가입 1건, 미납 30건)과 고용보험료 17건 3,157천원(미가입 1건 미납 16건)을 가입하지 않거나 고지 받은 후 납부하지 않음.
- 2012.11.29.자로 ○○군 ○○읍 ○○리 산43번지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중 2012.11.29.자로 ◇◇기능인영림단 ◇◇ 단장이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망하였으나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국유림관리소 5개 영림단은 83건의 산림사업에 대하여 사업주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음.
▶ 산림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가입여부 관리 철저

8

조림수종 선정 부적정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르면 조림예정지정리 사업의 경우 적지적수 선정 프로그램과 주변 임상분포 등을 고려하여 임지능력급별로 조림수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 국유림관리소는 2009년 ◇◇군 ◇◇읍 ◇◇리 22-바-2에 적지적수가 아닌 백합나무를 6.5ha 조림하여 실패함에 따라 2012년 소나무로 재조림하고, 또한 2012년 잣나무를 6.4ha 조림하였으나 습지 지역에 0.4ha가 고사하여 들메나무로 재조림 함.
- ● 국유림관리소는 2002년 ◇◇군 ◇◇읍 ◇◇리 162-9에 적지적수가 아닌 백합나무를 5ha 조림하여 실패함에 따라 소나무 천연하종 갱신되었고, 삼척군 원덕읍 이천리 191-1에 상수리나무를 7ha 조림하였으나 3ha는 소나무로 천연하종 갱신되고 나머지 4ha는 소나무로 재조림 함.

▶ 임지특성에 맞는 조림계획 수립으로 적지적수 조림이 되도록 할 것

9

조림지 활착률 조사 부적정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조림지 활착조사는 조림 당해년도 6월부터 9월까지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림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지침의 조림지 활착률 조사요령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 ◇◇, ◇◇, ◇◇국유림관리소는 2011, 2012년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나, 조사야장 및 조사복명서가 없음.
▶▶ 조림지 활착률 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 주의 조치

10

숲가꾸기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8조에 안전관리비 정산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된 금액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는 2013년도 경제림 가꾸기사업 등 3건의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아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하여 안전관리비 및 이윤, 부가가치세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 총 133천원을 과다하게 정산하였음.
▶▶ 과다하게 집행된 안전관리비 133천원 회수 조치

11

조림지 풀베기 사업 적기 미실행

- 산림청 훈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훈령)」에서 풀베기사업의 작업시기를 1회 실행지는 5월~7월에 실시, 2회 실행지는 8월에 추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9월 초순 이후의 풀베기는 피하고 있음.

※ 온대중부 : 5월 하순 ~8월 하순

- ◇◇◇◇◇ 국유림관리소는 2012~2015년까지 실행한 풀베기 사업 132개소 946ha를 9월 이후까지 사업실행 하여 풀베기 사업효과가 저하됨.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기 사업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12

어린나무가꾸기사업 실행 부적정

- 산림청 훈령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지침」에서 어린나무가꾸기 작업대상지의 작업시기는 6~9월 사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는 2014년 실행한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3개소 6.7ha를 12월10일 사업 착수하여 12월23일 사업완료함에 따라 적기 사업실행 하지 못하여 사업효과가 저하됨.

▶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적기 사업 실행하여 사업효과 제고

1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한 준수 미흡

- 「2015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에 따르면 4~10월은 북방수염하늘소 활동시기이고 피해목제거 사업 추진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이 우려되므로 방제를 금하고 있으며, 북방수염하늘소 분포지역은 3월말 까지 방제완료 하되, 추가 고사목 등을 감안하여 늦어도 4.15.까지 방제완료(공문시달) 하여야 함에도,

- ◎◎국유림관리소는 관내가 북방수염하늘소 활동지역임에도 4.16~5.7. 기간동안 직영방제단을 활용하여 춘천지역 소나무 고사목 52본을 방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방지 효과가 높지 않고,
- ◎◎국유림관리소 관내 재선충병 방제는 사유림과 연접하여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유림과 연계한 종합적인 완전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해야 하는데, 인접 □□시와는 고사목제거 등 방제협조가 되고 있으나, 인접 ■■군과는 방제전략에 대해 협조·협의·공유가 없으므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완전방제 대책 마련과 유관기관 협조가 필요함.
▶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제를 3월말까지 완료토록하고 인접한 관계 시·군과 협동 완전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14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협업방제 미흡

- 「소나무재선충병 효율적방제 실무매뉴얼」에 의하면 재선충병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고사목을 벌채하여 수관 상·중·하부에서 골고루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벌채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작업이 용이한 흥고 부위에서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나무재선충 방제는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실행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는 ○○도 ○○군 ○○면 ○○리, ○○리 지역에서 2012.3.26., 3.30. 2회에 걸쳐 잣나무 4본 고사목의 시료를 채취하면서 벌채하지 않고 하단부에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 2013년 ○○군지역 재선충병 방제를 실행하면서 ○○군은 항공방제 40ha를 ○○시 하였는데,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지상방제를 135ha 실시함으로써 국유림관리소·지자체간 협조체제가 미흡하였음.
※ 산림병해충 방제는 방제지역 및 병해충 이동 등이 광범위 하므로 국·사유림을 공동방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
-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자체와 협업방제를 실시하여 방제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통보

15

소나무류 생산확인 부적정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확인용 ‘검인’을 찍거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원목용 소나무류는 검인을, 펄프·칩·보드용 등은 생산확인표 발급함.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3년~2014년까지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 46건(2013년 20건, 2014년 26건)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원목용 소나무류를 포함한 전체 신청수량에 대하여 ‘생산확인증’을 발급처리, 원목에 대한 ‘검인’ 찍기를 실시한 근거를 확인 할 수 없음.
- ▶▶ 소나무류 생산 확인 관련 규정 준수 철저

16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원가 산출 부적정

- 「산림병해충 방제 설계 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에 따라 기능부문의 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매년 상반기에 공표되는 노임단가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 ①①①①자원연구소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9건 시행하면서 당해연도 상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여야 하는데 당해연도 하반기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7,271천원 과다하게 산출하였음.
 - ▶▶ ①①①①과학원장은 인건비를 과다하게 산출한 관련자에게 신분상 경고 조치

17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비 산출 부적정

-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4년도 “①①①산림기술사사무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2014.1.14.~1.23., 910만원) 추진
 - 업체에서 실시설계 용역비에 방제대상목 사전조사를 위한 선목이 포함된 인건비가 포함하였으나,
 - GPS좌표에 의한 방제대상목 본수와 경급 제공되므로 선목이 포함된 인건비가 불필요, 과업지시서에도 선목작업 수행이 미포함, 업체는 선목작업을 실제 미수행 함.
- ◉ 따라서, 선목이 포함된 사전조사 인건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나, 준공처리 (2014.1.22.)하면서 정당액 6,397천원보다 2,703천원을 과다지급 함.
 - ▶▶ 과다지급된 실시설계비 2,703천원을 회수하고 동일 사례 재발방지 조치

18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실행 부적정

-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사업 전년도 기 보고한 솔잎흑파리 피해지 재해저감 사업 방제대상지 중 일부구역이 당해 방제 시 제외되고, 특히



2013년 솔잎흑파리 재해저감 사업의 경우 방제 사업 실행 면적 470ha 중 372.5ha가 전년도 방제계획에 보고된 지역과 다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지 선정 사유와 기본 조사없이 사업 추진하였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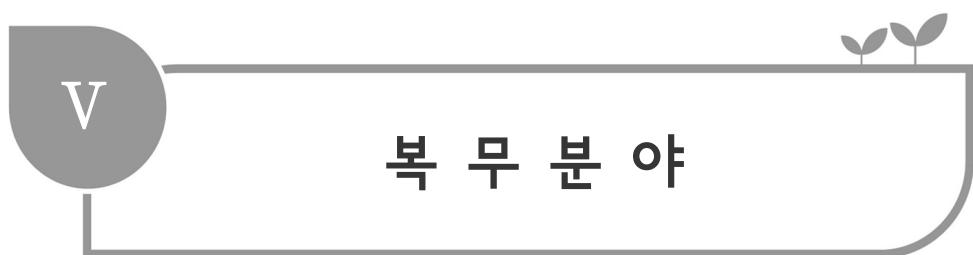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 제8조에 벌채를 수반하는 임업적 방제의 경우 벌채대상목 또는 존치대상목 선목이 완료된 후에 사업을 착수하여야 하는데 선목비용을 설계에 계상하지 않아 선목없이 사업을 실행함.

▶◆◆국유림관리소장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병해충사업 추진 철저

19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작업원 관리 및 공시목 처리 부적정

-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요령(산림청 훈령)」 제21조에 따라 사업 참여 작업원의 자격,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토하고 작업원의 적정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 ①①국유림관리소는 2012년도에 ①①군 ①①면 ①①리 산22-1번지 소구역 모두베기사업(6ha 295m³)을 ◆◆◆산림조합과 계약체결하여 착공계를 받으면서 작업원 운영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지 않아 적정한 작업원의 사업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 또한 공시목 조재비용을 사업예정가격 산출시 공제하여야 하는데 ‘조재율 조사 야장’ 을 보관하지 않아 공시목 조사수량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시목 조재비용을 공제하지 않음.
- ▶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작업원 관리와 공시목 공제를 철저히 하지 못한 관련자 신분상 조치





1

민원서류 접수 관리 소홀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민원사항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하거나 전자적 시스템(국민신문고)으로 접수 관리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5.1.1.부터 2015.4.22.까지 총 15건의 민원 서류를 온나라에 문서 등록만하고 민원사무처리부 또는 국민신문고에는 접수하지 않았음.

▶▶ 관련기관 주의 촉구

2

외부강의 사전신고 미이행

- 「산림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에 따라 산림청 소속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등)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행동 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원 ○○○○○○과 소속 임업연구사 ○○○은 2014.6.27. ○○대학교의 식물원 수목원전문가 양성과정(6시간, 강의료 600천원)에 사전 신고 없이 외부강의 실시함.

▶▶ 관련자 주의 처분

3

각실 보안점검 소홀

- 「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 제8조(보안점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은 사무실에서 퇴청시 각자 개인별로 담당 캐비넷, 책상 등 잠금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문서 등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캐비넷에 보관 관리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 관리팀은 2015.9.24. 21:10 현재 임업서기보 ◎◎◎이 문서 출력물(국유림 무단점유지 관리계획 등 3건)을 캐비넷이 아닌 책상위 책꽂이에 꽂아 두거나, 공석인 책상의 캐비닛을 잠그지 않은 상태로 모두 퇴청함.

▶▶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4

개인별 전시임무카드 정비 소홀

- 각급 기관의 장은 평시체제에서 전시체제로의 신속한 전환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명시한 “전시임무 및 주요 조치 카드”를 작성 · 관리 하여야 함.
- 그러나 ◎◎◎◎◎관리소에서는 2015.8.19. 을지연습 기간중 직원 24명 중 4명이 인사이동으로 변동사항이 있었음에도 개인별 “전시임무 및 주요조치 카드”를 정비하지 않고 있음.

▶▶ 개인별 전시임무카드 정비



5

휴대용저장매체 점검 소홀

-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각급기관에서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일반용, 비밀용(대외비 포함)으로 구분하여 등록 후 주기적으로 점검 · 관리 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총 9대(일반용 8, 비밀용 1)의 휴대용 저장 매체(USB)를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휴대용저장 매체(USB)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6

유연근무제 출·퇴근 시간 등록 소홀

- 「국가공무원 복무 · 징계 관련 예규」 제4장(유연근무제)에 따라 유연 근무제 신청으로 조기출근자(8시 이전 출근)와 야간근무자(19시 이후 퇴근)는 각각 출근 시간 또는 퇴근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여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나,
 - ○○○○○○○○센터에서는 2015.7.1부터 2015.8.31.까지 기간 중 시차출퇴근형 및 근무시간선택형 근무자 2명이 총5회 출 · 퇴근 시간을 복무관리시스템(e사람)에 등록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소홀히 함.
- ▶▶ 유연근무제에 따른 직원 출 · 퇴근 시간 등록을 하도록 복무관리를 철저

7

출장조치 미이행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6조(출장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예규」 제6장(출장) 규정에 의거 정규근무지외에 공무를 수행하는 출장공무원은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제311호)」 제5조(출장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국유림관리소 기계운영서기보 ◆◆◆은 2014.9.3. 16:00 현재 출장 조치없이 13:00부터 16:00까지 굴삭기 수리를 위해 ○○시 소재 ▲▲ 공업사에 출장을 나감.
 - ▶▶ 복무규정에 따라 출장 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8

공용차량 운행일지 기록 소홀

- 「산림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을 운행한 경우 차량운행일지에 일자별로 운전자, 사용자, 용무, 운행거리 등의 운행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함.
- ○○○○○○○관리소 ○○지역팀 ○○○○○○○휴양림은 청원산림보호직원 ○○○가 공용차량을 이용한 2015.7.1. 출장내역과 차량운행일지를 상이하게 기록하였으며, 2015.8.26. 출장내역은 차량운행일지에 기록하지 않음.
 - ▶▶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촉구



9

공용차량 운행 관리 소홀

- 「산림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규정 제12조에 따라 차량관리부서는 차량관리에 필요한 차량관리대장, 차량운행일지, 배차 신청 및 승인서 등의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함.
 - ○○관서 ○○팀에서는 ○○구8528호 등 5대의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 책임자를 팀장이 아닌 운전 실무자로 지정하여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운행 확인 결재를 운전 실무자 본인이 혼자 처리하고 있으며, ○○팀에서는 ○○주1635호의 차량에 대하여 2014.7.16.부터 2014.8.7. 까지 7회 배차승인 없이 운행하였고, 2014.8.18.부터 2014.10.13.까지 10회 동안 차량운행일지 결재 확인 없이 운행하였으며, ○○나5580호의 차량은 2014.7.21.부터 2014.7.28.까지 3회 배차승인 없이 운행하였음.
- ▶ 앞으로 「공용차량 관리규정」에 따라 공용차량 운행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10

차량유류구매카드 사용 부적정

- 공용차량 운행을 위해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차량유류를 구매하도록 운영하고 있음.
- ○○○○○○○관리소에서는 2015.1.1.부터 2015.4.21.까지 차량유류 구입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정부구매카드)를 총 37회 사용하면서 2015.3.4.

유류구매카드의 사용 용도에 맞지 않는 공용차량 하이패스 단말기 대금 200천원을 일반 정부구매카드(210목)가 아닌 유류구매카드(210목)를 사용하여 결재하였음.

▶▶ 관련기관 주의 촉구

11

차량운행일지 유류수불 미기록

- 산림청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공용차량 운행에 따른 차량유류 수불상황을 유류수불대장과 차량운행일지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5.1.1.부터 2015.4.22.까지 공용차량 운행을 위해 유류구매카드(정부구매카드)로 구입한 차량유류 7건(358리터)에 대한 유류수불 상황을 유류수불대장에만 기록하고 차량운행일지에는 기록하지 않았음.

▶▶ 관련기관 주의 촉구

12

현업근무일지 작성 소홀

- 「국립자연휴양림 현업근무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연 휴양림관리자는 자연휴양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매월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자연휴양림 근무자는 현업근무일지를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 ○○○○○○○휴양림에서는 현업근무조에 따라 근무하면서 실제 근무한 근무자를 근무일지 상에 기록하여야 하나 2015. 5. 20, 2015. 6. 30,



2015, 7, 12, 총3건에 대하여 실제 근무자를 미기재 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오류로 기재 하는 등 근무일지 작성률을 소홀히 함.

-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현업근무일지 작성률 철저히 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지역팀에 주의 촉구

13

산불신고 단말기 점검 소홀

- 「2015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국유림관리소에서는 매일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산불신고 단말기 작동 상태를 확인하여 산불감시 인력의 산불감시 및 근무상황을 점검하여야 함.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감시인력 37명에게 산불신고단말기 지급하여 현장 배치하고 있는데 2015.3.3. 15:00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확인 결과 당일 근무조인 산불감시인력 17명 중 산불신고 단말기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데도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음.

- ▶ 산불신고 단말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14

근무상황 사후 지연처리

- 「공무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휴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신청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

- ◉ ◆◆◆◆◆원 ○○○○○○과 ◆◆◆는 2013.12.23.부터 2013.12.24.까지 연가를 실시하였는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하루지난 익일 2013.12.24. 사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 임업서기 ◆◆◆는 2013.12.23.부터 2013.12.30.까지 특별휴가(결혼)를 실시하였는데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하루지난 익일 2013.12.24. 사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 ▶ ◆◆◆◆장은 관련 부서장에게 앞으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관련자 주의 처분

15

공무상 병가 처리 부적정

-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공무상 병가는 「공무원 연금법」에서 정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선거직 등)이거나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우에만 허가권자가 질병, 부상을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 관리소 ■■지역팀에서는 임업주사 ■■■이 2015.1.26. 어깨 골절상을 입어 2015.1.27.부터 2015.2.2.까지 5일간 일반병가(진단서 미첨부)로 처리한 후 2015.1.29. 진단서(3주간 안정가료 요)를 발부받아 당초 근무상황을 연장(5일→14일)하면서, 공무상요양승인 결정 없이 일반병가(14일)을 공무상 병가로 변경처리 하였음.
- ▶ 앞으로 근무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16

연말 공사감독관 작업복 구입 부적정

- ◉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 체재비 및 피복비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 불요불급한 경비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4. 1. 21.부터 2014. 12. 18.까지 숲가꾸기 사업(39건)을 추진하면서 사업장 감독의 피복은 현장감독에 필요한 작업복이므로 필요한 경우 사업기간 중에 구매·활용하여야 함에도 사업종료 시점인 연말이 되어 2014.12.5. 사업장 현장감독 명목으로 관리소장 및 ▼▼▼▼팀 직원 4명에게 총 2,485천원(497천원/1인) 상당의 작업복을 시설부대비로 구입 지급하였음.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

17

비밀문서 관리 소홀

- ◉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 제23조, 제30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은 비밀수발부 및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고 안전한 금고 또는 이중철제 캐비넷에 보관하여 하는데,
-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2013년도 ▲▲6000 ◆◆◆◆산림청 자체충무 계획(Ⅲ급)'을 2013.1.8. 수령하여 비밀수발부 및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지 않고 문서고에 일반문서와 혼합하여 보관함.
▶▶ 「보안업무 취급요령」에 따라 비밀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비밀관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는 경고 처분

18

비밀문서 분류 관리 소홀

- ◉ 「전시 비밀문서 관리지침 및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비밀은 생산 및 접수와 동시에 비밀등급 우측에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의 후송할 비밀에 한하여 적색으로 ‘급’으로 분류 관리 하여야 함.
- ◉ ◆◆◆◆◆ 관리소에서는 전시 또는 비상사태하의 후송 대상 미밀 문서 2건(2014년 자체충무계획 및 을지연습기본계획)에 대하여 ‘급’으로 분류 관리하지 않고 있음.
▶▶ 후송 대상 비밀문서를 ‘A급’으로 분류 관리하도록 조치

19

비공개 대상 문서 보안관리 소홀

- ◉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산림청 정보 공개 운영지침」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공문서 및 그 첨부 물의 복사물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캐비넷에 보관하거나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 ●●●●● 관리소에 대하여 2015.1.1. 19:30경 불시 보안점검 결과 서무계 임업서기보 ●●●은 비공개 제6호(이름·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정보) 분류 대상 민감 정보인 국내이전비지급신청서(4건),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 및 입체불청구서(12건)를, 서무계 청원경찰 ●●●은 비공개 제6호 분류 대상 민감 정보인 인부임청구서(11명)를 각각 책상위 책꽂이에 그대로 방치하였음.



- ● 국유림관리소에 대하여 2014.12.31. 20:00경 불시 보안점검 결과 보호관리팀장 임업주사 ● ● ●은 ● ● ● ● 산림청에서 비공개 문서 제8호(부동산 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로 분류 생산한 「산림청-국방부간 상호 사용승인을 위한 실태조사계획」 관련 비공개 문서의 출력물을 책상위 책꽂이에 그대로 방치하였음.

▶▶ 관련자 주의 처분

20

소화기 소방점검 미실시

- 「당직 및 방화규정」 제19조에서 실(室)이 벽 · 칸막이 등에 의하여 구획된 경우 그 사용책임자는 당해 실(室)안의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소방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 ○ ○ ○ ○ 관리소 ○ ○ 지역팀 ○ ○ ○ 자연휴양림에서는 화재 취약 시설인 산림문화교육관, 야외화장실 등 비치된 이동식 소화기 6개에 대하여 정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청사내 비치된 이동식 소화기 14대에 대하여 7월 이후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 ◇ ◇ ◇ ◇ 산림청 운영과에서는 공공기관의 방화관리를 위해서 각 실에 소화기 32대를 비치하고 있는데 2014. 12월 소화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화기단속 및 화재예방을 소홀히 하였음.

▶▶ 관련부서 주의 촉구

21

당직 지시사항 전달 소홀

- ◉ 「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에 따라 당직근무자는 지시사항을 소속 기관에 전달하고, 필요시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확인하거나 통보하게 하는 등 당직근무 강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 산림청(운영과)에서는 당직근무 시 평일의 경우 산림청에서 통보한 당직 지시사항을 소속기관에 전파하고 있으나 휴일(토·일요일)의 경우에는 지시사항을 소속기관에 전달하지 않고 있음.
▶ ◆◆◆◆ 산림청장은 당직주무 부서장(운영과장)에게 앞으로 당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의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22

개인별 보안점검 소홀

- ◉ 「산림청 당직 및 방화규정」 제8조(보안점검)의 규정에 따라 직원은 사무실에서 퇴청 시 각자 개인별로 담당 캐비넷, 책상 등 잠금상태를 확인하고 컴퓨터, 프린터, 전열기 등 전원을 차단하여야 함.
- ◉ 연말연시 불시 보안점검 결과 ◆◆◆◆ 산림청 등 4개 소속기관에서 임업주사보 ◆◆◆ 등 7명은 외장하드 또는 usb, 기관통장 및 카드 등이 보관된 책상서랍 미시건, 프린터기 또는 전열기구 전원 미차단 등 개인별 보안점검을 소홀사례가 있었음.
▶ 자체 보안점검 강화 및 보안점검 위반자에 대하여는 주말·명절 당직명령 등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통보

VI

임업정책자금 분야





1

융자금 임산물 구입비 인정한도 초과지원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비의 견증과 정산시 사업 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금액한도는 2012년도 20,000천원, 2013년도 및 2014년도 30,000천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조합은 2013.7.3. ○○에게 전문임업인육성자금(조경수, 융자 100%) 100,000천원을 대출하여 총사업비 100,000천원을 정산하면서 사업 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구입한 임산물(반송 등) 인정한도액(30,000 천원/ 1인)을 초과 인정하여 임산물 구입비로 집행한 정당 정산액인 92,000천원 보다 8,000천원을 과다 지원하였음.
 - 또한, 2014.5.26. ○○○에게 조경수생산자금(융자 80%) 200,000천원을 대출하여 총사업비 250,000천원을 정산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구입한 임산물(느티나무 등) 인정한도액(30,000천원/1인)을 초과 인정하여 임산물 구입비 등으로 집행한 정당 정산액인 194,296 천원 보다 55,704천원을 과다 지원하였음.
- ▶▶ 과다 지원한 융자금 63,704천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조치 및 관련자 주의 처분

2

조경수생산자금 융자한도 초과 지원

- 「2013년도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조경수생산자금의 융자 단비는 78,400천원/ha(기준단비 98,000천원의 80%)으로 1ha당 78,400천원 이내에서 실사업비 기준으로 융자비율 80%까지 융자지원 가능함.

- ○○○산림조합은 2013.11.5. ○○○에게 조경수 재배면적(0.42ha)에 대하여 조경수생산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인 32,928천원(0.42ha × 78,400천원/ha)을 초과한 100,000천원을 융자하여 67,072천원을 과다 지원하였음.
- ○○○산림조합은 2013.7.4. ○○○에게 조경수 재배면적(0.3582ha)에 대하여 조경수생산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인 28,082,880원(0.3582ha × 78,400천원/ha)을 초과한 50,000천원을 융자하여 21,917,120원을 과다 지원하였고, 2013.11.25. ○○○에게 조경수 재배면적(0.249ha)에 대하여 조경수생산자금 융자지원 한도액인 19,521,600원(0.249ha × 78,400천원/ha)을 초과한 30,000천원 융자하여 10,478,400원을 과다 지원하였음.
▶▶ 과다 지원한 융자금 99,467천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 조치 및 관련자 경고 처분

3

융자금 집행실적 검증 및 정산 미실시

-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단기임산물생산(순수융자) 등 사전융자 가능사업은 자부담 집행 확인 후 사업비 잔액을 사전 융자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르면 융자사업은 회계 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합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단기임산물생산자금 등 융자 지원한 65건(1,830백만원) 중 21건(597백만원)을 자부담 집행 확인 없이 사전 융자 및 사후 사업비 집행실적 검증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4건(170백만원)은 사전융자 후 사후 사업비 집행실적 검증 및 정산 미실시, 나머지 40건(1,081백만원)은 증빙금액이 미달되는데도 추가



집행실적 검증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아 총 65건에 대한 총사업비(자부담 포함) 2,221백만원 중 1,794백만원의 집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등 융자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조합은 2013.6.27. ○○○에게 전문임업인육성자금(조경수, 융자 100%) 100백만원을 대출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융자금 집행실적 검증과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조합은 2015.5.21. ○○○에게 표고생산자금(20백만원, 융자 80%)을 대출하면서, 총사업비(25백만원) 중 자부담(5백만원)의 집행 여부를 사전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 잔액 20백만원을 대출하였음.
▶▶ 자부담 집행여부 확인 및 사후정산을 철저히 실시하고, 융자금이 부당 사용 되었을 경우 회수 등 조치

4

표고생산 융자금 대출 부적정

-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에 의거 단기임산물(밤·표고 등)의 생산 지원을 위하여 표고원목·톱밥재배자 또는 법인경영체에 표고생산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산림조합은 ○○○ 등 2명에게 표고원목 구입비용 등으로 표고생산 자금을 지원하였으나 대출금의 집행 증빙자료를 보면 ○○○와 ◇◇◇는 표고원목 구입비용 명목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은 표고생산자임에도 상호간에 실제 거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표고원목을 거래한 것으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19,200천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음.
▶▶ 부당하게 대출받은 정책자금 19,200천원을 관련규정에 따라 회수하도록 시정 조치

5

사망자 대출금 사후관리 부실

-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61조에 따르면 대출취급 기관은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대상 사업자의 대출금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부도, 폐·휴업, 사업포기, 사망 등 정책자금 대출 중도 회수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대출금을 회수 조치하여야 하며, 2015년 「임업정책자금업무방법」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업·재산 등의 매매·양도 등으로 경영권 또는 담보물을 제3자가 인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인수자로부터 인수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관리에 지장이 없고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당초 사업계획에 대한 대상자 변경승인 통보가 있을 시 채무인수를 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 등 4개 산림조합은 용자금을 대출받은 ○○○ 등 8명이 사망하여 대출금 중도회수 사유에 해당되므로 대출잔액 총 96,030천원에 대한 대출금 회수 또는 채무인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 사망 확인된 사업자의 대출 잔액(96,030천원)을 회수하되, 채무인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채무인수 등 조치

6

임야매입자금 구입 임야 산림경영계획 미수립

-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에 따르면 전문임업인이 임야매입 자금으로 구입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산림 경영계획을 편성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산림조합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산림조합장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경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조합은 2014.6.2. 임업후계자 ○○○에게 임야매입자금 100백만원을 대출하여 매입한 임야(○○○ ○○○ ○○○ 산113번지)에 대하여 1년 이상이 경과한 감사일 현재까지 산림경영계획을 수립 하지 않고 있음.
▶ 사업목적대로 산림경영계획을 편성하도록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융자금 회수 조치

7

임업용 면세유류 신고서 확인 및 현장점검 미흡

-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3조 및 「농·축산·임·어업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14조제2호에 따르면 면세유류 공급대상 임업인은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관리 업무요령」에 따르면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 신고” 시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여부를 이·통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영림계획서 및 벌채실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산림조합장이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임업용 면세유류 공급지침」 제8조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장은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를 년 2회 이상의 정기적 및 년 1회 이상의 비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면세유류가 부당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조합은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3,424명에게 면세유류인 휘발류 293천ℓ, 면세가 520백만원(면세액 265백만원)을 공급하면서 면세유류 신청자가 제출한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신고서』에

영림업 또는 벌목업 종사여부 등에 대하여 이·통장 확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도, 『임업기계 보유현황 및 영림사실신고서』의 90% 이상이 영림사실 등에 대한 이·통장 확인을 받지 않고 영림계획서 등 객관적인 자료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면세유류를 공급하였음.

- ○○기관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비보유 및 사용 유무 등에 대한 현장점검 없이 지역산림조합에 대한 서류점검만 실시함.
 - ▶ ○○조합은 면세유류 공급대상자에 대한 영림사실 확인 등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 ▶ ○○기관은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 시 현장조사를 병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점검대책 마련토록 조치

8

시설자금 목적외 사용

- ◉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에서 목가공시설지원사업 용자조건은 연리 3~4%, 3년거치 7년상환, 용자한도 개소당 설계금액의 80%이내로서 용자목적은 노후된 목재이용가공시설의 신설, 증설 및 교체에 그 용도를 정하고 있음.
- ◉ ○○산림조합은 ○○○이 '07.12.18. 용자금 지원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현대 4.5톤 트럭 구입비 34,640천원이 포함된 224,640천원을 용자 신청하였는데도 이를 제외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를 승인하여, '07.12.20. 목가공시설자금 200,000천원, 임산물 이용가공 원자재 구입자금 21,000천원, 총 221,000천원을 용자지원 함.
 - ▶ 정책자금 34,640천원 회수, 기관경고 및 관련규정 준수 철저



9

숲가꾸기 융자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 ◉ 「산림청 임업정책자금 집행지침」에 숲가꾸기 융자사업은 산림조합장이 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융자대상자 선정결과 및 대출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함.
 - ◆◆◆산림조합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숲가꾸기사업으로 정책자금 93건 971,000천원(2010년 43건 475,000천원, 2011년 26건 262,000천원, 2012년 24건 234,000천원)을 융자하면서 융자대상자 선정결과 및 대출내역을 ◆◆군청에 통보하지 않음.
 - 그 결과 ◆◆군에서 중복 실행한 사업지와 대조 검사한 결과 ①①①은 상수리 조림지를 유실수 숲가꾸기 사업지로 대출받았고, ▲▲▲은 대출받은 같은 해에 상수리나무를 추가 조림함.
- ▶◆◆◆산림조합장은 융자대상자 선정결과 및 대출내역을 ◆◆군에 통보하고, 현지확인 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신분상 경고

10

숲가꾸기 융자사업 자금집행 검정 부적정

- ◉ 「농림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융자사업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군산림조합에서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숲가꾸기사업으로 정책자금 대출한 93건 971,000천원(2010년 43건 475,000천원, 2011년 26건 262,000천원, 2012년 24건 234,000천원) 중 40건 406,000천원은 자금집행내역을 제출받지 않았고, 자금집행내역으로 제출받은 53건 581,184천원의 적정집행 여부를 검토하지 않음.
- ▶산림조합중앙회장(조합감사위원회)은 ◆◆군산림조합의 융자사업에 대한 자금집행 적정여부를 조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경우 융자금 회수 등 조치

11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로부터 한도 초과 임산물 구입

- ◉ 「산림종합자금 운용규정」(2011.12.14. 산림청 훈령 제109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제12조에 따르면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로부터 임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2009년 1천만원 미만,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1천 5백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는데,
- ◉ ◆◆, ◆◆, ◆◆, ◆◆, ◆◆◆◆, ◆◆◆◆, ◆◆ 등 7개 조합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조경수 생산자금 등을 ①①① 등 10명에게 융자 후 사업실적을 검증 및 정산하면서 위 10명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 등 총 19명에게서 주목 등 임산물총 558,055천원을 구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 바, 위 운용 규정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임산물 구입한도는 255,000천원으로 303,055천원을 초과하여 제출하였는데도 검증 및 정산시 이를 그대로 인정하였음.
▶ 사업자등록증 미소지자로부터 임산물 구입 인정한도를 초과한 금액 (303,055천원)을 회수

12

직접노무비 검증 및 정산 부적정

- ◉ 「산림사업종합자금」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비의 검증과 정산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게 노무비(직접노무비에 한한다) 지급을 인정할 수 있는 연간 사업비 규모는 5천만원 미만으로 하고 있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르면 수급인(노무자)의 자필 서명,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 ▼▼▼ 산림조합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의 조경수 생산 등 정책자금 등을 ①①① 외 9명에게 응자 대출 후 사업비를 검증 및 정산하면서 직접 노무비의 경우 자필영수증, 노무내역, 금융기관 거래자료 모두를 확인한 후 정산하여야 하는데도 금융기관 거래자료 확인없이 직접 노무비 총 78,760천원을 그대로 인정하였음.
- ▶▶ 직접노무비 검증 및 정산시 통장사본 등 금융거래자료도 확인하도록 조치

13

임업정책자금 경영실태조사 미실시

-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에 따르면 대출취급기관(산림조합)은 산림 사업종합자금 5천만원 이상 지원농가에 대하여 연 1회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 시산림조합에서는 5천만원 이상 정책자금 대출자 ①①① 등 8명 (대출금 총 642,300천원)에 대하여 2011년도에는 정책자금 경영실태를 실시하지 않아 대출 자금을 지원목적 외 사용하였는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등 정책자금 경영실태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음.
- ▶ 정책자금 대출지원농가에 대하여 경영실태를 조사하지 않는 등 정책자금 관리업무 소홀, 연1회 경영실태조사 철저히 하도록 조치

14

전문임업인육성자금 응자 지원 부적정

- 「임업정책자금집행지침」에 의하면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는 지자체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고,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제4조에 따르면 사업 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증거자료에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 산림조합에서는 2010.3.15, 전문임업인 육성자금(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등)으로 ○○○에게 300,000천원을 대출하기로 응자심의 회에서 결정하였음에도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사업계획 검토시 대상지별 지번, 면적도 기재되지 않는 등 부실한 계획임에도 보완조치없이 2010.3.31 응자 대출하였는가 하면, 사업실적 확인 또한 어느 개소에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였는지,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는 등 사업실적 검증을 소홀히 하였음.
- ▶▶ 사업실적에 대해 현지확인 등 검증을 정확히 실시하여 융자금이 부당사용 되었을 경우 회수 등의 조치하는 한편, 사업계획 및 실적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주의촉구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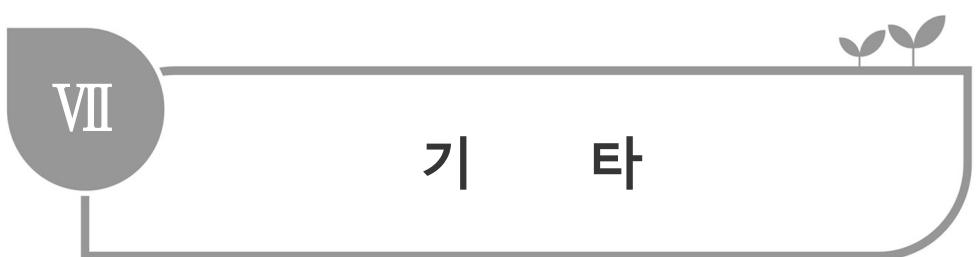
임업정책자금 사업실적 증거자료 검증 미흡

- ◉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제4조 제5항 및 제7항에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등록을 마친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 ◉ 산림조합에서는 2010년 임도시설 자금으로 ①①①에게 100,000천 원을 2010.10.27 대출하고 같은 해 12.31 현지확인 및 증빙 서류를 검증한 바, 총사업비 102,060천원 중 ①①①이 공급받는자로 된 54,293천원의 세금계산서 등과 ①①①이 대표이사로 있는 ②②②②



◎(주)가 공급받는자로 된 47,767천원의 세금계산서가 증빙으로 제출
(①②③이 하슬러아트에 48,300천원 입금)되어 있어,

- ◉ 금번 감사 중 조합으로 하여금 ◎◎◎◎◎(주)의 세금납부 확인여부를 위해 동 회사의 매출전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산림조합의 현지조사서상의 사진도 12.31. 조사했는데도 초본류 활엽수 등의 잎이 푸른 상태로 촬영된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등 사업비 검증 및 정산이 부실하게 이루어졌음.
- ▶▶ 사업실적에 대해서 현지 확인 등 검증을 정확히 실시하여 융자금이 부당 사용 되었을 경우 회수 등의 조치, 사업실적 확인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1명)에게 주의촉구 조치



기 타



1

자체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적정

- 2012년 국고수입금 감사결과 산림훼손복구비로 장기보관중인 정부보관금을 반환 또는 국고수입 조치하도록 처분하였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1건 5,525천원은 미복구상태이기에 복구비도 반환하지 않고 보관중 이므로 조속히 복구토록 하고 정부보관금 반환 추진하거나 미복구시 국고수입조치 필요.
- ①②국유림관리소는 2012년 ○○지방산림청 종합감사 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불법산지전용지 8건 3,365m²는 복구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행정조치 없이 방치하고 있어 미 복구된 불법산지전용지 8건 3,365m²에 대하여 복구 이행하되 미 예치된 13,391,950원은 예치 받도록 “불법 산지전용 복구 및 복구비 예치” 감사처분을 받았으나,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 감사처분 한 ① 복구대상 8건 중 완결 2건, 완결예정 2건, 변상금부과검토 3건, 장기추진 1건이었으며, ② 예치 하여야 할 복구비 3건 중 2건이 예치되지 않았는데도 방치하고 있음.

▶▶ 감사결과 미 이행건에 대하여 조속히 처리 및 관련자 신분상 조치

2

면세대상 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제7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10 제15호에 따라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실행하는 산림사업과 관련된 설계·감리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기관은 ○○○ 등과 2014년 작업임도 시설공사 감리 등 2건, 총 12,349천원(부가가치세 1,122천원 포함)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실행 완료하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설계·감리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으로 사업완료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도록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1,122천원을 정산하지 않았음.
- ○○기관은 ○○○와 2013부터 2015년까지 보완사업 진입로 및 주차장 기반시설 설계용역 등 4건 총 93,558천원(부가가치세 8,507천원 포함)의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실행 완료하였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휴양림 사업의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으로 사업완료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되도록 사업비를 정산하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8,507천원을 정산하지 않았음.

▶▶ 미정산된 부가가치세 9,629천원 정산 조치

3

임업기계장비 구입 후 미사용

- □□국유림관리소는 숲가꾸기 등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품질 향상을 위하여 2009년 19대(20,650천원)의 기계톱을 구입하였으나, 현재까지 3대만 사용하고 있으며 16대는 미사용 보관중임.

▶▶ 미사용 기계톱에 대한 적절한 활용방안 마련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과다계상 및 미정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에서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총 공사비의 2.48%)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 산림연구소는 2011년 삼나무테스트하우스 전기공사의 예정 가격이 39,534천원, 진입로 포장 및 데크시설공사의 예정가격은 39,075천원으로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닌데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부대경비를 포함하여 총 2건에 1,414천원을 과다하게 원가에 계상하여 전액 정산 함.
- ○○ 산림자원연구소는 2012 ~ 2013년 4천만원 미만인 4건의 서식지 제거사업에 대하여 산림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일반관리비, 이윤 등 부대경비를 포함한 653천원을 과다하게 계상하였는데 계약자인 (주)○○○○과 ○○ 영림단으로부터 정산하지 않음.
 - ▶▶ 정산하지 않은 금액 회수,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신분상 주의 조치

5

산림토목사업 선금사용 부적정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6조에 따르면 해당 선금은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 배분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관은 2014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등과 사방댐 및 계류 보전사업 5건, 1,156,169천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총 795,700천원의 선금을 지급받아 644,710천원은 자재구입 등에 사용하였으나, 150,990천원은 선금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인 직원급여로 사용하였음.
 - ▶▶ 앞으로 선금지급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주의 촉구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 ◎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17, 2010.11.30)」 제9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입찰자가 입찰금액 산정시 조정없이 반영하고 사후 정산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 기준 제94조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 지급시 사업자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 ◎ ○○지방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2010년 간선임도 설치사업 등 3건의 보험료 정산시 현장대리인 ①②③ 등 3명의 보험료를 중복 정산(2,521천원)하여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735천원)를 포함한 3,256천원을 과다하게 정산함.
- ◎ ●●국유림관리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008년 숲가꾸기 사업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3,310천원을 감액정산하지 않아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550천원)를 포함한 3,860천원을 과다하게 정산함.
- ◎ ④⑤국유림관리소는 2010년 청사신축공사를 ▲▲▲▲건설(주) ①②③과 계약체결하면서 입찰공고시의 건강보험료 등 9,624천원(국민건강 3,760천원, 국민연금 5,864천원)을 계약시에 그대로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사후정산하여야 하는데도 착공시 제출한 8,478천원(국민건강 3,312천원, 국민연금 5,166천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입찰공고 시 계상된 보험료 차액(1,146천원)과 일반관리비 등 제경비(242천원)를 포함한 1,388천원을 과다하게 정산함.
▶▶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회수 조치 및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



7

프로그램개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감정보(신체검사증명서, 징계 등)의 경우 일반적 정보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추가동의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본부는 ►►►►관리시스템 안전관리 기능개선사업 외부용역을 추진하면서, 전체직원들의 신체검사증명서, 징계현황 등 민감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데,
 - 별도의 추가 동의를 얻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외부용역업체에 보안서약서도 징구하지 않아 민감정보 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 ►►►►►장은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 민감정보 수집 · 관리에 대한 별도의 동의를 얻은 후 사업 추진, 외부용역업체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 민감 정보 유출방지대책 마련

VIII

모범 · 수범 사례





1

국유림 무단점유지의 적극적인 대응 및 합리적 관리

■■ 추진 배경

- ⑩⑪지역은 장기무단점유(1,109건 91ha)가 많고 건물·시설(주거·종교용)점유가 63%에 이르며, 투기성 건물 매매에 의한 소유권 변동이 잦아 민원대응이 어려우므로 집단점유지의 자료 구축과 현행화 시급
- 점유지 주변 무단 점유확장에 따른 산지 불법훼손의 지속 증가로 점유지 주변 국유림 훼손방지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

■■ 목 표

- 명확하고 근거 있는 무단점유지 관리를 위하여 실태 파악 후 조사결과를 DB화하여 정식 대부지 수준으로 관리
- 적극적인 점유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담당자의 역량을 배양하고 국유재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순찰 등 대응 강화

■■ 추진과정

①실태조사 계획수립(2·3월)	②무단점유지 실태조사(5~10월) ③강제철거 및 산림복구	④조사결과 정비DB구축 ⑤매뉴얼 제작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기간 : 연중· 대상지 : ⑩⑪지역· 조사자: 관리팀원(6명), 국유재산감시단(4)· 예산 : 인건비와 강제집행철거비(7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조사 자료 작성(무허가건물 확인, 지지체 항측자료 등 도면확보)· 조사자에 대한 사전 교육(GPS 활용)· 도로명 조사를 기준한 실태조사 실시· 불법시설물 등 대집행실시· 훼손지 복구조림(협업 및 자체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태조사 완료· 점유지 별 개별 훌더 및 개별 수치지도 구축 활용· 채권정리· 산림사업예정지 확보

■■ 추진 성과

- 3년간 점유지 44%정리, 훼손지 복구(2011년말 1,109건→2014년말 621건)
 - 실점유자 확인에 따른 채권정리(1,188건 15,597백만원)
 - 점유자·세입자 구분조사 및 점유 용도 변경(주거용→기타용 47건, 2ha)
 - 국·사 경계부 정밀측량조사로 점유지 추가 발견 및 사법조치(47건, 1ha)
- 실태조사 후 무단점유 실태조사 책자 발간, DB자료 현행화
- 대부지 관리 수준과 동일하게 무단점유지별 개별홀더 관리체계 구축
- 무단점유지 관리 대응 매뉴얼을 최초 제작하여 타기관에 공유(100부 보급)

■■ 평 가

- 집단무단점유지 실태조사로 체계적 관리기반 마련
 - 혼재된 내역 정리, 실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근거
 - 부실 관리 채권 정리(사망자, 착오부과, 이중부과지 등에 대한 채권취소)
- 지자체(○○시)와 무단점유지 문제 논의·대응 시발점
 - ○○공원 등 사용허가 양성화 조치로 상호 상생·협력관계 발전
 - 불법훼손 사건에 대하여 공동조사 및 사법처리 협조
- ‘국유재산감시단’의 상시 운영으로 산지훼손 대응강화
 - 집단점유지 일대 순찰도면 작성, 순찰 강화하여 점유자 경각심 고취
 - 담당자의 잊은 변동에도 능동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치지도 작성, 실태조사 내역 책자화, 무단점유관리 매뉴얼 활용한 현장대응 강화



2

대면적 군(軍)사용허가지 적극 반환 조치로 산림복지서비스 기반마련

■■ 대부 현황

소재지	지번	최초대부	지적(m²)	대부면적(m²)	수대부자
○○도 ○○시 ◇◇읍 △△리	산32-1	'89. 5. 29.	8,033,455	1,558,321	육군 제○○○○부대장

■■ 반환 배경

- 군부대 사용허가지는 대부분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추진
 - 본 임지는 25년간 특수부대 훈련장으로 철저히 출입 제한 지역
- 그동안 군사용허가지 실태조사는 전무한 상황이었으나 적극적으로 실사용 실적 등 향후 활용여부 등을 재검토하도록 촉구
- 약 5년전부터 동지역에서 훈련을 하지 않고 장소를 옮겼다는 사실 확보 한 후 수차례 방문 설득하여 국유림 반환 결정

■■ 반환 경과

- 실태조사를 통해 사용허가지 전지역(155ha) 확인(2014.1~2월)
- 군부대와 ○○국유림관리소 합동으로 현장조사 실시(2014.4.8)
- 시설물(숙소, 강의실 등) 철거에 예산이 수반되므로 향후 처리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사용허가 전 면적 반환 받음(2014.5.7)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요청(2014.11.10.)하여 해제완료(2015.7.24.)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현재 □□□□□에서 ‘체험교육 나눔의 숲’ 조성 검토 중
- 자연경관이 수려한 대면적으로 ‘나눔의 숲’ 조성으로 대국민 산림복지 서비스 기반 마련

3

국방부와 업무협업으로 훈증목 수집·파쇄하여 경관개선 및 산업적 활용

■■ 개요

- 대상지 : ①①시 ①①면 및 ①①면 일원(고속도로변)
- 기간 : 2015. 2. 23 ~ 3. 30(30일간)
- 산업적 활용 :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1,000톤

■■ 추진배경

- 기존 훈증무더기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햇빛, 강풍, 인위적 훼손 등에 의해 훼손되어 자연경관 저해는 물론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음.
- 집단발생지 주변 훈증목 수집이 가능한 지역에 군 병력을 동원하여 폐목재 처리 전문업체와 협약 체결하여 산업용재로 활용.

■■ 추진방법

- 수집방법 : ①① 제①훈련비행단 80명/1일 동원(총 2,400명)
- 파쇄물량 : 1,000톤
- 파쇄업체 : ①①시 ①①면 소재 ㈜○○○○○
- 산업적 활용 : 열병합발전소 연료용 공급

■■ 기대효과

- 군 병력 동원과 훈증목 무상처리에 따른 예산절감
- 경관을 저해 훈증목 처리로 자연경관 개선
- 훈증목 산업적 자원재활용 및 방제효과 거양



4

지역주민·시민단체 공동협력으로 기관이미지 제고

- 국립수목원의 광릉숲은 연간 약 38만명이 찾아오는 국민쉼터이고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지역주민, NGO 등 시민단체의 관심이 높은 지역임.
- 2013년부터 ‘편의시설 확충사업’ 및 ‘종합연구동’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기획단계부터 시민단체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마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였고,
- 지역예술가모임(수목원 가는길 협동조합)을 통해 공사현장 비산먼지 방지막을 ‘아트펜스’로 재탄생시켜 시설공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감소시켰음.



아트펜스 설치



아트펜스 꾸미기

5

휴양시설물 관리방향 전환으로 예산 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

■■ 추진 개요

- 국립자연휴양림 목재시설물 내용연수가 20여년 경과한 14개동을 '15년 상반기에 철거하고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 최근 5년간 운영수지 적자가 증가 추세임에 따라 경영개선대책 일환으로 시설물 철거·신축위주의 사업에서 외형과 골격을 유지하고 리모델링하는 휴양시설물 관리방향 전환 추진.
 - 적자현황 : ('10)13억원→ ('11)19억원→ ('12)31억원→ ('13)46억원→ ('14)53억원

■■ 추진 성과

- 휴양시설물 관리방향 전환으로 건축물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총 70억원 ('15년 53억원, '16년 17억원) 예산절감 효과.
 - 2015년 : 철거·신축비용 : 6,500백만원 → 리모델링비용 : 1,200백만원(Δ 5,300백만원)
 - 2016년 : 철거·신축비용 : 2,500백만원 → 리모델링비용 : 800백만원(Δ 1,700백만원)
- 리모델링 추진시 숙박시설을 확충 할 수 있으므로 총 6.6억원('15년 2.2억원, '16년 4.4억원)의 경영수지 개선 창출.
 - 2015년 : 65천원/일 × 240일(평균가동율) × 14객실 = 218,400천원
 - 2016년 : 65천원/일 × 240일(평균가동율) × 28객실 = 436,800천원

■■ 기대 효과

- 시설물 철거·신축위주의 보완사업에서 리모델링으로 휴양시설물 관리 방향 전환하여 자원절약 및 휴양림의 역사성을 보존한 스토리텔링이 있는 휴양림으로 경영수지 개선 및 홍보효과 창출.



6

목재에너지림 기반조성 시공방식 개선 우수사례

■■ 추진배경

- 2012년부터 새만금 간척지에 목재에너지림(1,000ha) 조성사업 추진
- 기반조성과정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공방식 개선.

■■ 추진내용

-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반조성 및 식재비용 절감 등 노력으로 2014년도 426백만원 예산 절감.
 - 새만금 간척지의 토양이 진흙성분이 많아 견고한 작업로 개설이 필요하여 원거리에서 혼합석을 공급받아 부설하여 추진하였으나, 2014년부터 작업로 전구간 4.6km에 대해 혼합석(자갈과 석분) 부설없이 시공하는 등 기반조성 시공방식 개선으로 293백만원 예산절감
 - 2013년 채수포(1ha) 및 묘목생산시설(3ha)을 반영·조성하고, 2014년 23만본을 생산하여 묘목구입을 위한 120백만원 예산절감
 - 2014년 묘목 직접식재 방식을 삽수 직접식재(활착률 92%)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식재 및 사후관리 비용에 대해 ha당 13백만원 예산절감

■■ 기대효과

- 검증된 기반조성 방식 개선으로 향후 기반조성 621ha를 추가 조성할 경우 사업비 7,452백만원 예산절감 효과기대.
※ (당초) 24백만원/ha → (개선) 12백만원/ha
 - 채수포(1ha) 및 묘목생산시설(3ha)을 통해 연간 30만본 생산이 가능하여 매년 220백만원 예산절감 효과기대.
 - 목재에너지림내 삽수 직접식재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사업 13백만원 예산절감.
※ (당초) 16백만원/ha → (개선) 3백만원/ha
- ▶ ◆◆◆과장은 목재에너지림 조성사업에 우수사례반영 검토

7

신규직원 현장체험 교육

- 한국임업진흥원에서는 현장 경험이 없는 2012~2013년 신규 채용된 직원 40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여 임업인과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임업의 현실을 체득하도록 하였음.
- 체험교육은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중 1주간 실시하고 조별 5명씩 현지숙박토록 하여 단순견학이 아닌 임업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배우도록 하였으며, 임업분야 ○○○농원(함양), ●●●산삼영농 등 6개소와, 임산업분야 ◆◆산업(인천), ★★★이엔피(청원) 등 4개소에서 실시 토록 하였음.
- 현장에서 임업인과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 실직적인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임업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문제점의 개선방안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음.
- 교육 후에는 월례조회시 “교육결과 발표”를 통해 전 직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였으며, 교육을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입사 5년차 및 기존직원에 대해서도 확대하여 체험교육 실시할 계획임.

【신규직원 현장체험 및 공유 사진】



〈 표고자목세우기 〉



〈 산부추 종자굴취 〉



〈 편백나무 가지치기 〉



〈 임업기계 및 집재체험 〉



〈 임업인과 소통 〉



〈 교육결과 발표·공유 〉

8

수목장림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 · 협력

■■ 추진배경

- 2009년 국내 최초로 개장한 “하늘숲 추모원”은 국유수목장림으로서 장례문화 인식전환으로 수목장 국민수요 급증(*추모목 분양률 96%)
-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정착을 위한 수목장림 구역을 10ha(2,009본)에서 30ha(6,000본)로 확대에 따라 지역주민과의 갈등 발생

■■ 갈등 주요쟁점

- 수목장림 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 시설 확대 반대
- 수목장림 조성 후 주변 지가 하락 주장, 보상요구
- 자연휴양림 등 수목장림 외 산림휴양시설 설치 요구

■■ 추진경과

- ('12.12월) 수목장림 “하늘숲추모원” 확대 · 공원화 조성계획 수립
- ('13.1.~9월) 수목장림 확대 공원화 사업 주민설명회 간담회(11회)

- ('13.5월) 수목장림 확대구역 간선 순환임도 사업 시행
- ('13.5월~) 수목장림 확대구역 숲가꾸기, 주민식수용 관정 신설
- ('13.9월) 수목장림 확대 공원화 사업 갈등해소, 확대·공원화 추진

■■ 추진현황

- 국유 수목장림의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 추진
 - 수목장림 조성지역 거주자 수목장림 사용료 관리비 100% 감면
 - “하늘숲추모원”의 지출 항목에 지역발전 지원 사업을 추가
- 산림욕장 조성 실시설계비 예산 반영 조치
- “하늘숲추모원” 분양구역 확대 고시 요청

■■ 향후 추진계획

- 추모목 DB조사, 추모로 조성사업 실행 및 구역확정
- “하늘숲추모원” 분양구역 확대 홍보 및 분양공고
- “하늘숲추모원” 구역별 순차적 분양 시행

■■ 기대효과

- 협의회·간담회 등 대화 창구를 수시로 가동하여 지역주민과의 소통
 - 협력·상생 의견을 적극적 수렴·계도하여 주민갈등 해소
- 자연친화적 “작은장례문화” 모델제시, 수목장림 활성화·인식전환
- 수목장림 확대를 통해 국가정책과 지역주민 상생·발전방안 마련



9

소나무재선충병 협업방제 실시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주체(사·공유림→지자체, 국유림→지방산림청)와 관계없이 책임방제구역을 설정, 협업방제를 실행함으로써 방제효과 극대화

● 경북 ○○○ ○○·○○○ 재선충병 협업방제

- ▲▲지방산림청은 재선충병 선단지인 ▲▲면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시와 MOU 체결('12.10.11)하고 협업방제 추진
- ▲▲지방산림청에 전담 T/F팀을 구성, 피해심한 ▲▲·▲▲면(▲▲시는 그 외 지역)지역을 직영 예찰조사(18,440본) 및 방제실행(19,447본, 758백만원)
- 2013년 춘기 적기방제로 지난해 보다 소나무고사목 33% 감소 (1,283본→862본)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찰 방제 계획

● 경남 ○○시 ▲▲면 재선충병 협업방제

- ▲▲국유림관리소는 김해시 고사목 증가로 매개충우화기 이전 방제 불가로 재선충병 확산우려가 있어 ▲▲시와 MOU 체결('13.5.3)하고 협업방제 추진
- ▲▲국유림관리소는 피해가 심한 ▲▲면(▲▲시는 그 외 지역)지역을 직영 예찰조사(8,500본) 및 방제실행(3,077본, 69백만원), 하반기 5천본 방제계획
- 2013년 춘기 적기방제로 재선충병 의심고사목이 현저히 줄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 방제 계획

10

글로벌 산림인재 양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교육 운영

■■ 추진배경

- 정부의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에 맞추어 교육 체제를 혁신하는 21세기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녹색교육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그린 스마트 교육 개념을 접목한 교육과정 개설 필요.

■■ 추진실적

- 교육효과환경보호교육시스템 자료 분석을 통해 그린스마트 교육 도입.
- 무선인터넷, 첨단 교육환경 조성으로 인프라 기반 조성.
- 산림교육원만의 특성화된 그린북(전자북) 디지털교과서 개발.
- 텍스트에서 벗어난 입체감 있는 학습보조콘텐츠 개발 확보.
-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을 위한 지식 나눔 운동 전개.
- 학습자 중심의 그린스마트 교육과정 운영 ('12년 8회, '13년 30회).

■■ 추진효과

- 양방향 교육을 지향함으로써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 주도.
- 공무원 교육기관 최초 그린 스마트 교육 운영으로 교육의 질 향상.
 - 교재 제작부터 교과 운영까지 직접기획 추진
 - 교육생에게 교육 수료 후에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교재화일 제공
- 타 교육기관에도 활용 가능한 스마트 교육 모델 제시.
 - 농수산식품연수원, 교육훈련 HRD 협회 등 벤치마킹 대상이 됨
- 인쇄물이 없는 스마트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재인쇄 절약.
 - '12년 8과정 (80천매) → '13년 30과정 (300천매) → '14년 40과정 (400천매)



■■ 금후 추진계획

- 그린스마트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교육과정 점진적인 확대 운영.
 - ('12년) 8회 → ('13년) 30회 → ('14년) 40회
- 그린북(전자북) 고도화 및 학습보조콘텐츠 개발 확보.

11

음주운전 추방대책 강구·시행하여 공직기강 확립 노력

- ‘음주운전 행위 근절 5대 행동강령’ 서약 실시.
-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음주운전 근절’ SMS 발송.
- 음주운전 근절 「차량용 스티커」 제작하여 자가용 차량에 부착.

12

다양한 도감 출판을 통한 대국민 홍보 및 국고 수입 증대에 기여

- 숲, 나무, 풀, 곤충 및 버섯 등 산림생물 이해를 돋는 다양한 간행물 발간으로 대국민 홍보에 기여.
 - 산림생물다양성 조사·수집·보전 및 자연교육 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식물, 곤충, 버섯 등에 대한 도감, 세밀화, 전문서 등 간행물 50여종 출판※ 도감류 수요가 가장 높으며, 기관특성(연구기관) 알림과 동시에 친근한 이미지 제공
- 출판사 저작권 판매와 정부간행물 판매센터 위탁 판매로 국고수입 증대 기여('10~'12.10월 21백만원 국고수입).
 - 간행물은 초기에 비매품으로 국·공립·학교도서관 및 관련 연구자들에게만 배포하였으나, 최근 일반인 관심 및 구입요청 문의 증가
 - 이에 간행물 50여종 중 국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수요가 높은 종류 약 20종을 판매하여 국고 수입 증대 기여

13

공용차량 유류비 단가계약 및 차량 배차 개선으로 예산절감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 ◉ 주유소와 유류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주유당일 유류가격 대비 할인(휘발유 : 100원, 경유 : 120원/1ℓ)된 단가로 구매하여 연간 2,192천원 예산절감 예상.
* 절감 예상액 : 2,192천원(휘발유 6,418ℓ ('11년)*100원 + 경유 12,915ℓ ('11년)*120원)
- ◉ 대중교통이 용이한 장소 또는 4인 미만 출장에 대하여 차량 배차를 제한하여 차량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 절약에 동참.
- ◉ 차량 배차현황을 기관 내부망에 게시하여 직원들이 출장일정을 잡는데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자료 공유 및 부서간 업무소통 강화.

14

「2013년 산림항공비전」추진을 통한 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기여

■■■ 주요 공적요지

- ◉ 항공안전운항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10.6~'11.11).
 - 항공기, 유조차 및 지상지휘차량 등에게 항공임무에 필요한 항적과 좌표 및 고도 등을 실시간 전달하는 안전운항정보시스템을 육군과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MOU('10.8월)체결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
 - '08년 육군 개발비 35억원이 소요되었으나 MOU체결로 프로그램 이전 사용에 따라 자체개발 비용 3.6억원만 소요(본부에 맞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가동)
- ※ 총 35억원중 자체개발비용(3.6억원)을 제외한 31.4억원 절감효과 기대
- ◉ 제작사 전문인력 활용과 자체 교육시스템 구축('10.8~'11.12).



- 제작사(러시아)의 정비사 1인을 일정기간 동안 용역으로 채용하여 제작사의 기술과 기법을 전수 및 정보 공유 통로 마련
※ 계약기간 : '11.10.1~'11.12.31(3개월), 계약금액 월 5,800천원
 - 전문성이 요구되는 CBT(Computer Base Training) 자료를 외주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 추진팀을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약 1.98억원 예산 절감
※ 외주개발비 2억원이 소요되지만, 본부 자체 프로그램 제작 등(0.02억원)의 비용을 제외한 1.98억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 ◉ 중형헬기 블랙박스 설치로 안전운항 환경 구축('10.10~'11.12).
- 중형헬기 9대는 블랙박스 없이 운영되어 외국에서 운영중인 비행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리 및 개조 장착
 - 기본설계를 항공본부 자체기술력으로 해결하여 총 28.3억원 상당 절감 (대당 3.15억원 × 9대)
- ※ 항공기 블랙박스 장착시 기술료를 포함 3.4억원이 소요되나, 장비구입(카메라, 저장장치 등) 0.25억원 외의 수리 및 개조비용 등 본부 자체기술력으로 부착하여 블랙박스 역할 수행
- 절감효과 : $(3.4\text{억원} - 0.25\text{억원}) \times 9\text{대} = 28.3\text{억원}$
- ◉ 대점검팀 신설과 정비표준 인시정량화로 예산절감('10.7~'11.12).
- 지방관리소에 분산된 정비 인력을 본부 집중화로 전환하여 대점검팀을 신설하여 외주업체에 의존하던 대점검을 자체 점검으로 전환
 - 또한 정비 인시를 정량화하여 기술력 향상과 외주 정비예산을 절감
 - '11년의 경우 100% 자체 대점검 실시로 4.07억원 예산 절감
※ '08~'10년까지 외주수리 23대(평균 7.6대)로서 매년 약 4.07억원의 외주정비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11년 대점검팀이 직접 수행

15

목재이용가치 활성화를 위한 목재 저목장 조성·운영

● 목재이용가치 활성화를 위한 목재 저목장 조성(2개소).

- '09년 자체 예산으로 국유림 최초 제1호 용문 문화재복원용 저목장 조성(면적 750m², 저목능력 1천m³, 사업비 213백만원)
- '10년 산림청 예산을 반영하여 제2호 홍천 한옥부재용 저목장 조성(면적 750m², 저목능력 1.5천m³, 사업비 194백만원)

● 저목장 운영을 통한 산림정책 홍보 및 예산절감 기여.

- 자체 추진 사업시 건축물과 시설물에 저목장 보관 목재를 사용, 한국적 이미지 형상의 홍보 CI를 직접 제작 설치·직영하여 외주보다 비용 절감
- 홍보판 제작·운반비 : 장승 3개, 8,100천원, 현판 : 6개 5,700천원 예산 절감

● 국산 목재시장 및 목재산업 활성화 기여.

- 계절적 편중 생산되는 소나무 목재를 상시저장 체제로 전환, 영세한 국산목재 시장에 안정적으로 목재 공급
- 저목장 보관목재를 박피·방충처리 층적에 의한 자연건조방식으로 하여 고품질 국산재 생산
- 저목장 조성사업의 전국적 확대 계기 마련('11년 전국 국유림으로 사업 확대 계기 마련)
- 목공예용 등의 목재를 저목장에 보관, 실제 실수요자에게 직거래를 통해 중간 유통단계 축소 및 가격안정화에 기여